

2025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5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추진목적

-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한 신규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
- 혁신제품 등록을 통한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 · 품질 · 시험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지원
-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지원분야

○ 지원 프로그램 단일 또는 중복 지원 가능

①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② 인증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지원
 - 기술인증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 품질인증 :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부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등
 - 시험인증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
- 기업당 최대 4,0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③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지원
 -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 지원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 혁신(시)제품 제도 안내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평가 후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의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지정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국민재난안전 분야 중 택 1(중복신청 금지)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로봇 ⑩ 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국민재난·안전 분야	① 탄소중립 ②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제품 ③ 재난안전제품

※ 혁신(시)제품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혁신조달종합포털(<http://ppi.g2b.go.kr>) 참조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1. 16(목) ~ 2. 20(목)
- 접수기간 : 2025. 2. 17(월) ~ 2. 20(목)

※ 신청마감일 (2025. 2. 20(목), 17:00)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자료명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1부	붙임2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1부	
5	공장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	1부	해당시
6	4대 보험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부	
7	2022, 202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각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 서류 순 직인날인 스캔 통합파일(PDF), 한글파일(HWP) 모두 E-mail 제출

신청방법

○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은 후 E-mail 접수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www.dgtp.or.kr

-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hittp.org

○ E-mail 접수처 : make@dgtp.or.kr

※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부담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조근우 선임연구원(Tel. 053-757-3709)